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영업소 모집 공고

1. 영업소 모집의 취지

■ 1대 법인 운송사업자의 운송면허 취소 예정

1. 운송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대 법인 운송사업자”의 운송면허 취소 예정**

→ **2024년 6월 30일 취소**(운수법 부칙 제6조: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향후 국토교통부 지침발표와 각 구청의 공시 예상

2. 결론: 2024년 6월 30일 이후 물량과 차량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운송사가 부족해 지는 현상 초래

→ 2024년 6월 30일 이후에도 살아남는 운송사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포착

■ 1대 법인 운송사업자가 운송영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방법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취득**

3.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보유(자체 차량번호 20대이상)**



■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법적 성격

1. **가맹사업자는 운송업과 주선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운수법 제2조 제5호)
2. **가맹사업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운수법 제3조 제2항)

2. 영업소 지역 및 법적 특혜

■ 영업소 지역 및 모집기간

- 모집목적: 화물운송가맹사업 본사와 영업소들간의 물류(량)네트워크 구축
- 모집지역: **부산지역 16개 구군별 1개 영업소**(운수법 제29조 제5항)
-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
- 허가받지 않고 영업소 설치운영시 가맹사업 허가취소(운수법 제32조 7의2)
- 모집기간: 1차 2023.12.15(금) / 2차 2023.12.29.(금)

■ 모집대상

- 부산지역 **1대 법인 운송사업자**



■ 항만물류정보(주) 보유 허가증 및 등록증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국제물류주선업 및 보세운송사업자 등록증
- 항만물류정보(주)의 각 영업소는 상기 허가증 및 등록증을 합법적으로 사용

■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법적 특혜

1. 안전운임제도 및 표준요율제도 하에서도 가맹비를 수령할 수 있다.
2. 직접 운송의무의 자동 이행
3.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소는 운송가맹사업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3. 영업소 운영 및 소장제(책임경영제)의 활성화

■ 영업소 운영

- 모든 영업소는 각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독립된 가맹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다.
- 각각의 영업소는 매출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항만물류정보 주식회사

Port logistics information Co.,Ltd.

지점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감로 37, 27동 233호(폐법동, 산업용품유통상가)(서부산영업소)
2023년 11월 22일 설치 2023년 11월 23일 등기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3길 17-4, 202호(경통하이츠)
지배인을 둔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감로 37, 27동 233호(폐법동, 산업용품유통상가)
(서부산영업소)
2023년 11월 22일 선임 2023년 11월 23일 등기

(영업소 등기부등본 등재)

■ 소장제(책임경영제)의 활성화

- 소장들(팀)은 항만물류정보(주) 본사 혹은 각 영업소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소장들(팀)은 면허 및 상호사용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본사 혹은 영업소에 지불 해야 한다.

시상-제 1호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책임자	봉은경
담당자	최정숙
연락처	310-4567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증

대표자: 조 선

법인등록번호: 180111-0990530

주 사무 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42번길 8, 오션빌딩 201호
(중앙동6가)

영업소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감로 37, 27동 233호(폐법동,
산업용품유통상가)

상 호: 항만물류정보(주) 서부산영업소

업 종: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년 월 일: 2023년 11월 22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영업소를 허가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2023.11.22. 화물운송가맹사업 영업소 신규 허가

(발급받은 영업소 허가증)



4. 물류네트워크 사업화 추진

본사 및 각 영업소는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정보망에 탑재하여
다른 영업소가 물량을 처리토록 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

5. 영업소 문의 및 연락처

■ 주소 및 연락처

부산 중구 중앙대로 42번길8, 오션빌딩 201호

항만물류정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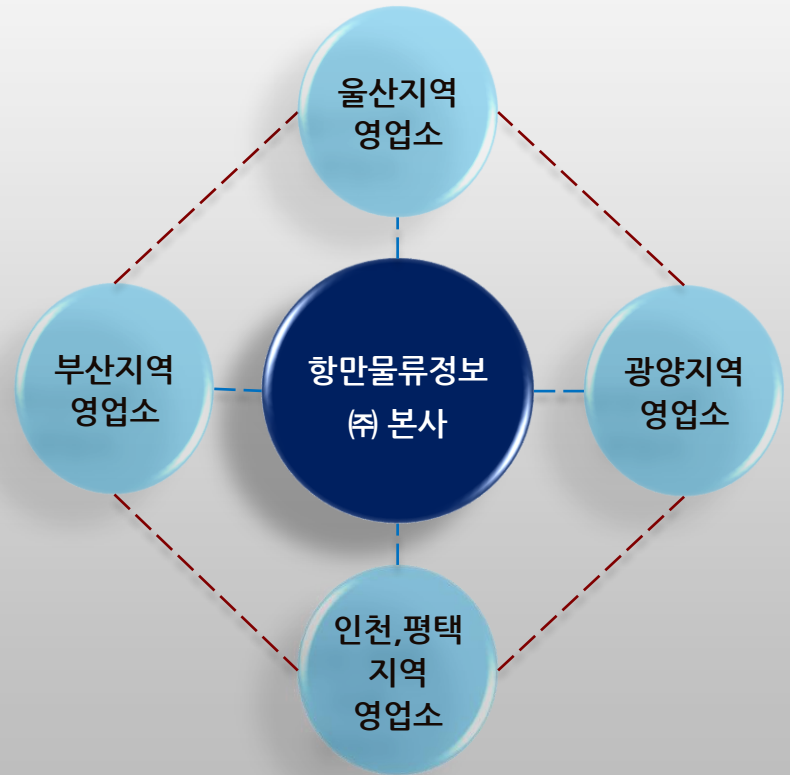
Tel : 051-412-2585

Fax : 051-412-2586

E-mail : phc2654@naver.com

담당자 : 명창규 본부장 (010-7777-2955)

박현철 부 장 (010-2445-2654)





6. Q&A

1. 2024년 6월 30일까지 넘버 2대를 보유하면 법인 운송사로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유하신 넘버의 종류에 따라 법인운송사 유지 혹은 취소로 달라집니다.

첫째, 5톤 미만 화물자동차, 경형과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운송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 운송사업자로 전환 됩니다.

둘째, 현재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5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구입해 2대를 보유할 경우에도, 소유대수를 늘리는 것은 소유대수 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법인운송사로 유지 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결 론

2019년 7월 기준 법 계정전 2대가 등록되어 있어야 법인 운송사를 유지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한 넘버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소유대수가 1대인 법인 운송사업자 중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로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개정법의 허가요건 (20대 이상)을 보완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국토교통부 의 유권 해석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이나 운송주선면허를 취득하면 운송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송주선업만 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운송(배차)업을 하는 것은 과태료 처벌 대 상으로 판단됩니다.

→ 동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4. 17.>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 형사 고발 시 동법 제67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1대 법인운송사업자(이후 개인운송 사업자로 변경)를 모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송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 까여?

2024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신고센터가 설치 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만물류정보 주식회사

Port logistics information Co.,Ltd.

→ 동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그럼 운송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취득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소 설치허가 취득

셋째, 넘버 20대 이상 구비(법 제3조제1항)

넷째, 넘버 20대 이상 소유한 운송법인의 영업소 설치허가 취득